

2021년도 제1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29.(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8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03건(안건번호 제2021-91073호~9200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91073호(순번 1번)는 포털 이용자가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사이트로 연결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91074호~91079호(순번 2번~7번)는 ☆☆☆☆☆와 ★★★★★
★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방송·영화)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91080호~91125호(순번 8번~53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91126호~91136호(순번 54번~64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만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91137호~92004호(순번 65번~932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2,13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9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8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과 제2호 안전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B 위원: 회의록 일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록을 수정함.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제2호 안건의 회의록 일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며,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록을 수정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쪽수를 기재하고 전체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30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932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은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국내 포털 사이트 '○○○○○' 이용자 '◆◆◆◆◆'가 '●●●●●'라는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영화) '○○○○○' 전체분량과 '◇◇◇◇◇' 예고편 등 일본 애니메이션(영화)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해당 애니메이션의 풀버전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설정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사무처 확인 결과 2021. 7. 29. 기준, 해당 폴더가 삭제되어 링크 설정 게시물에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해외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직접링크(direct link)가 설정되어 있고, 해당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총 □□□□□의 영상 파일을 제한없이 다운로드 가능했었음. △△△의 영상 파일은 '○○○○○○' 풀버전을 ■■■■■의 △△△ 파일(▲▲▲)로 분할하여 게시

했던 것이며, '◇◇◇◇◇◇' 예고편(▽▽▽)이 ▼▼▼▼▼ 파일에 포함되어 있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우측과 하단에 다수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해당 광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하는 것임.

대용량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파일의 경우 일반적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시물과 달리, 파일을 저장한 사람이 생성한 공유 전용 주소 등을 통하여만 공유가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은 쉽게 그 주소를 알 수 없음. 이러한 사실 및 게시글과 댓글 내용에 비추어볼 때, 클라우드 서버에 애니메이션 파일을 저장한 사람과 심의대상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은 동일인물로 추정됨.

우리 법원은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링크게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바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 클라우드 사이트 불법복제물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확대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불법복제물을 해외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사람과 업로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 및 제공한 사람은 별개의 인물이 아닌 동일인으로 보이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임.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게시물의 경우, 불법복제물의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소재한 경우 위와 같이 링크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해외 사이트에 대한 시정 권고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고 있고,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소재한 경우에는 링크(불법복제물의 위치정보)가 아닌 불법복제물 자체의 삭제·전송중단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직접 시정 권고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후 링크 설정 게시물에 연결이 불가하게 된 것과 별도로, 영상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한 자체 만으로도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번~7번은 민원인(실명 1명, 익명 1명)이 신고한 건임. <<<<<<를 통하여 애니메이션(방송) ‘<<<<<<’을, >>> 블로그를 통하여 애니메이션(방송·영화) ‘>>>>>>’, ‘♠♠♠♠♠’, ‘♠♠♠♠♠♠♠’ 등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17개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꿈쟁코무산’ 제1화~제6화, 제8화~제13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5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영화 ‘♠♠♠♠♠♠♠’의 전체 분량인 1시간 48분 중 35분을 제공 중임.

순번 5번 내지 7번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이 아닌 일부 분량을 ‘♡♡♡♡♡’ 등의 이름으로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해당 분량은 1시간 40~50분 내외의 영상저작물 중 25~35분 분량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재한 것으로 2차적저작물보다는 단순복제물로 보아야 함.

각 게시물은 상업저작물의 상당한 분량을 게재하고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순번 2번 내지 7번의 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번~7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7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8

번~5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오픈마켓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음.

(순번 14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쇼핑 포털인
'♥♥♥♥♥'에서 '♣♣♣♣♣'를 362,080원에 해외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세페이지에는 상품의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음.

(순번 45번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오픈마켓인
'♣♣♣♣♣'에서 '●●●●●'를 391,400원에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
하고 있음.

본 건 기기의 자세한 작동원리 및 기능은 기술보고서를 참고해주시
기 바람. 심의대상인 스트리밍 기기의 판매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
중계방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8번~5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스트리밍 기기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앱을 미설치한 상태로 스트리밍 기기를 수입해 저
작권 침해를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를 금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함. 해당 기기를 구입한 이후에 앱을 설치.

이용하도록 판매자가 안내를 하고 있음.

- C 위원: 만약 공기계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면 공기계를 홍보하는 것도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기기를 통해서 모든 방송 시청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게시글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임. 이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가결 의견임.
- A,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53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4번~64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각각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등을 각각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4개 게시물임.

(순번 62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8화~제14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54번~6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4번~64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65번~93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77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5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3시간 1분 34초를 제공하고 있음. 월트 디즈니컴퍼니 코리아에서 2019. 4. 24. 배급한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26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270캐시에 제공 중임. 워너브라더스코리아에서 2021. 3. 18. 공개한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05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방송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를 560포인트에 제공 중임. 시즌 1의 1화~10화를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2021. 5. 14. 공개한 드라마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65번~93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65번~932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5번~93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91073호~92004호(순번 1번~93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9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8. 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